

서스틴베스트 행동강령

1 법규의 준수

- 1.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- 1.2 업무관계를 가질 시에는 법적으로 정당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한다. 또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고 약정된 기간과 조건을 준수한다.
- 1.3 사업파트너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간섭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1.4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가성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1.5 사업 체결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사업 파트너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.
- 1.6 모든 거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상호 영업비밀을 준수한다.
- 1.7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며 무단 사용, 복제, 배포,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2 이해상충 방지

- 2.1 현재의 고객관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이해의 상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평가한다.
- 2.2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검토와 주의 의무를 다한다.
- 2.3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견되면 회사에 즉시 알린다.
- 2.4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, 만일 이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한다.

3 정보차단벽

- 3.1 정보차단벽(Chinese Wall)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

원,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·무형의 모든 수단, 절차,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

- 3.2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영방법 등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
- 3.3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1년 5월 18일

(주)서스틴베스트 직인생략